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1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3.24.]

www.fermat.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23.]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정 보 공 개 서

(주)페르마홀딩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 공개서를 드립니다.

(주)페르마홀딩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6956-8505] / [가맹사업부서 전화번호 : 070-5056-383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6956-850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X. 첨부 파일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페르마홀딩스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7.17	2020.07.23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법인등록번호	110111-7559432	사업자등록번호		327-86-01761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심현우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사내이사	양성보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사내이사	조성봉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기타비상무이사	김학영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기타비상무이사	하헌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현우	02-6956-8505	02-6956-8506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상 호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00캠퍼스	
상표(서비스표)	페르마 Fermat	등록번호: 4100896350000(41류)
	페르마	등록번호 : 4101175740000(41류) 등록번호 : 4006142750000(16류)
	Fermat	등록번호 : 4101175750000(41류) 등록번호 : 4006142760000(16류)
광 고		

그 밖의 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66,781	76,138	490,643	1,171,320	50,576	74,409
2022년	676,461	125,844	550,616	957,717	77,910	79,973
2023년	645,445	93,526	551,918	973,865	18,673	26,301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직영점포함)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심현우	대표이사	2020.07~현재	(주)페르마홀딩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양성보	사내이사	2020.07~현재	(주)페르마홀딩스 사내이사	학원사업 총괄
	조성봉	사내이사	2024.07~현재	(주)페르마홀딩스 사내이사	-
			2020.07~2024.07	(주)페르마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관	기타비상무이사	2020.07~현재	(주)페르마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김학영	기타비상무이사	2024.03~현재	(주)페르마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하현	기타비상무이사	2024.10~현재	(주)페르마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
	상근 임원 수	비상근 임원 수	
2023년 12월 31일	2	2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페르마 Fermat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상호 사용	2002.04.27. 출원 2003.08.20. 등록	출원 4120020008797(41류) 등록 4100896350000(41류)	(주)페르마홀딩스	2033.08.20
페르마		2003.10.24. 출원 2005.06.16. 등록	출원 4120030023021(41류) 등록 4101175740000(41류)	(주)페르마홀딩스	2025.06.16
		2003.10.24. 출원 2005.04.11. 등록	출원 4020030046880(16류) 등록 4006142750000(16류)	(주)페르마홀딩스	2025.04.11
Fermat		2003.10.24. 출원 2005.06.16. 등록	출원 4120030023022(41류) 등록 4101175750000(41류)	(주)페르마홀딩스	2025.06.16
		2003.10.24. 출원 2005.04.11. 등록	출원 4020030046881(16류) 등록 4006142760000(16류)	(주)페르마홀딩스	2025.04.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의 가맹사업 현황

1.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를 시작한 날: 2003년 12 월 01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6년 08 월01일)

2.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대표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페르마에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신동엽	2003.12.01~2008.11.3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24
(주)페르마에듀		조영남	2008.12.01~2011.06.2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9-4 4층
(주)대교에듀피아		남궁은	2011.06.28.~2013.02.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5 (가산동 6층)
(주)대교에듀피아		유기중	2013.02.12.~2017.09.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8층(봉천동, 대교타워)
(주)대교에듀피아		조경란	2017.09.20~2020.07.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3층(봉천동, 대교타워)
(주)페르마홀딩스		심현우	2020.08.01.~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22, 2층(방배동, 대경빌딩)

3.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업종

영업표지	업종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교과)	초·중·고 전학년 수학교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0	70		68	68		67	67	
서울	8	8		10	10		9	9	
부산	3	3		3	3		3	3	
대구	4	4		4	4		4	4	
인천	10	10		8	8		9	9	
광주	3	3		3	3		3	3	
대전	3	3		2	2		2	2	
울산									
세종	2	2		2	2		2	2	

경기	18	18		17	17		17	17	
강원	3	3		3	3		3	3	
충북	3	3		3	3		2	2	
충남	3	3		3	3		3	3	
전북	2	2		2	2		2	2	
전남	1	1		1	1		1	1	
경북	2	2		2	2		2	2	
경남	4	4		4	4		4	4	
제주	1	1		1	1		1	1	

5. 바로 전 3년간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9	5	0	4	3	70
2022	70	5	0	7	4	68
2023	68	2	0	3	0	67

6.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67	127,170	1,824	681,600	8,520	8,600	97	61개점 대상
서울	9	138,511	1,664	298,000	4,411	30,400	390	9개점 대상
부산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4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9	215,125	2,808	621,600	8,474	72,000	761	8개점 대상
광주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0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7	169,471	2,710	681,600	8,520	21,800	203	14개점 대상
강원	3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4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 = 매 월 재원생 수 X 평균 학원비(220,000)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가 본사에 보고한 매월 재원생 수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평균학원비는 초등부 190,000과 중등부 250,000으로 책정된 학원비의 평균금액입니다.(전국 교육청마다 기준 수강료와 가맹점 마다 수업 시수가 달라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없음.)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4곳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2곳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7개	3,44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학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년 1월~12월	48,399	48,399		
광고	(비공개)	2023년 1월~12월	48,399	48,399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마곡나루지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6 2층	02-2665-1495
신한은행	마곡역금융센터지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95	02-6023-7600
우리은행	마곡나루역지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2층	02-2666-007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 선택하여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페르마홀딩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 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료,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천원)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액	33,0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14,85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비용	가맹금의 45%
노하우 제공비	14,85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비용	가맹금의 45%
초기 교육/훈련 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비용	가맹금의 10%

귀하는 학원 가맹영업을 개시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때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천원)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중도해지를 포함, 계약 해지 및 종료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어, 이로 인해 원상회복 (손해배상 포함) 및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담보물에서 상계 처리 후 반환	계약이행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36,000,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6,000
영업표지사용권 대가	14,850
노하우 제공비	14,850
초기 교육/훈련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0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71,050				
필수설비(정착물)	해당 없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냉난방 설비	가맹사업자가 선정한 설비업체	88,000 / 49,500	880 / 495	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	평당 80만원 예상 / 냉난방 설비 평당 45만원 예상
초도 물품 구입비	가맹본부	1,100		계약체결 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광고 홍보 비용)	가맹사업자가 선정한 업체	33,000		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	월 500만원 X 6개월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전화:070-5056-383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타당성 조인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입지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입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원하지 않는다면 당사와 협의를 거쳐 가맹희망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내거주, 설립인 요건 충족	①대한민국 국적과 국내거주 ②학원법이 정하는 설립인의 자격요건
종업원(강사)	특별한 기준 없음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소 2명 이상의 강사 채용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해당 없음.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본사와 가맹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서면을 작성 이후, 가맹금 납부를 진행.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인원수에 따라 변동가능
광고(홍보)비	당사	매월 83.6	매월 25일	계약 종료 및 해지 시 선입금된 금액		전체 가맹점 연간 광고(홍보)비용 (VAT포함)
교육훈련비	당사	교육에 소요된 실비 적용	교육 실시 10일 이전		소멸성 비용	강사의 자질과 능력 향상교육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당사	초등 1인당 16.5, 중등 1인당 19.8	익월 25일		소멸성 비용	수강생에 대한 로열티 (VAT포함)
지연이자	당사	연12%	지급기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별도의 회계 감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해당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 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

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부담하는 금원은 없으나, 양수인은 신규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만일, 양수인이 잔여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비(가맹금의 10%)를 당사에 지급하고, 완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 제 7조에 정하는 가맹캠퍼스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학원』 가맹캠퍼스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상호·로고·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2주일 이내에 당사에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학생 명단, ID 등 회원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학원』 가맹캠퍼스임을 표시하는 간판 등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전화번호 등록 삭제, 차량의 영업표지 제거, 기타 상징물 등을 즉시 철거한 후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당시 당사에 공급받은 교재는 합의하에 교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가 지정하는 곳에 이상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는 회원 및 학부모, 강사, 거래처와 정부의 유관 기관들에게 귀하가 더 이상 당사와의 사업상 관련이 없음을 서면으로 즉시 공지하고 법률상 강제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지 대상 현황 및 공지문서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위 항도에 불구, 당사는 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회원 및 학부모, 강사, 거래처와 정부의 유관 기관들에게 귀하가 더 이상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이 없음을 공지하거나 공지 의무 이행 여부를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이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⑦ 본 계약에 특별히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종료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⑧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 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 교재 목록표에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교재목록 리스트 별지 참조	왼쪽에 기재된 교재를 외부 혹은 제 3자에게 판매 할 수 없음.	교재 등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있음

가맹계약서 제30조 [교재 등의 공급]

가맹 계약서 상 ⑤“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교재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위 교재를 가지고 불법 과외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하여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학원 관계자 등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홈페이지 및 당사 관리자 사이트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첨부1. 교재 목록표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수학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해당 행정구역, 인구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설정 (중합검토 후, 행정동 또는 법정동 1개~4개 사이에서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 → 본사 담당자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 되는지 여부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나목
○ [페르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3항 제3호 제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1. 귀하가 본 계약기간동안 자격요건과 자격유지 의무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38조 제1항 제1호
02. 귀하가 로열티, 광고 및 홍보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제1항 제2호
03. 귀하가 개원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제3호
04. 귀하가 영업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4호
05. 귀하가 영업비밀 유지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5호
0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0조 1항의 기한까지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미 제출 했을 경우	제38조 제1항 제6호
07. 귀하가 당사에서 제공하는 경영상 정당한 규제 및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7호
08. 당사의 시스템(교육, 교재, 평가)과 학원시설 및 CI등을 미 준수하고 사용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제8호
09. 당사의 사전 승인 없는 교재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9호
10. 자료의 제출 및 보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10호
11. 귀하가 가맹캠퍼스의 운영상의 주요지침을 미 준수한 경우	제38조 제1항제11호
12.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8조 제1항제12호
13. 귀하가 본 가맹학원과 동종 학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학원의 영업에 참여, 업무를 제휴한 경우	제38조 제1항제13호
14.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제38조 제1항제14호
15.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가맹캠퍼스를 선동하여 본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제15호
16. 기타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귀하가 계약을 유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 제1항제1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제1항 제1호
0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9조 제1항 제2호
0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 제1항 제3호
0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 제1항 제4호

0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
0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동일한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0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 제1항 제7호
0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 제1항 제8호
09. 귀하가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 제1항 제9호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 39조 제1항 [계약의 즉시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학원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한 수정 이외에는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의 뜻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도인은 당사에 대한 채무를 즉시 변제 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페르마사업팀 (070-5056-3832)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인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가맹금의 10%)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완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에 가맹금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상속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나 재산상속인 중에 가맹점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상속인의 계약 잔여기간 동안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가맹금의 10%)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초등/중등 수학학원 ○ 초등/중등 수학 교재판매	해당 없음	문의 : 페르마사업팀 (070-5056-383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학원법에 따라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법 및 시. 도 조례에 따름	제한 없음	문의 : 페르마사업팀 (070-5056-38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목적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학원” 전체 또는 지역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연합광고를 실시 합니다.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적절한 비율[가맹점사업자 매월 83,600원 (부가세 포함)을 부담하고, 이외에 금액을 가맹본부에서 부담합니다]에 의해 광고비를 분담하여야 하며, 지역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부담 이외 금액 부담	매월 83,600원 (VAT포함) 부담	가맹계약서 지정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개별 행사	설명회	본사 인력 무상 지원	행사 실비 정산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홍보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42조(손해배상)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제24조 [경업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제23조[영업비밀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계약 체결	D-29~28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8~27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광고 비용 포함)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냉난방비 포함)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의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① 계약이행: 계약의 성실한 이행 및 교육을 통한 경영 지도를 하여 가맹사업의 동일성 및 독창성, 전문성 유지 여부 확인 ② 표준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교육과 서비스 유지 및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학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70-5056-383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③ 판촉: 신규 학생 등록창출 및 가맹캠퍼스의 활성화 촉진 방안 지도 ④ 기타 가맹학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초기 교육/훈련	학원 운영 및 관리프로그램 교육	개원 전 교육	1일	필수 교육
	교재(소개) 활용 및 TEST 교육			
상시 교육	강사 및 교수법 교육	집체 교육	1일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생각하는 수학 페르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초기 교육/훈련	1일	납부 가맹금의 10%	최초 계약 시 이수
상시 교육	1일	—	필요 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할 경우 당사자와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학원 개원 전까지 강사, 학원장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캠퍼스 개원 승인을 보류하는 등 그 불이익이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페르마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070-5056-3832)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 첨부 파일

첨부1. 교재 목록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첨부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